

담보물권으로서의 임금우선평권의 법리에 대한 소고

Preferential Right of Wage Claims as a Security Right

최 윤 희*

Choi, Uni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수반성의 문제 |
| II.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제반 특성 | V. 소급효와 추급효 |
| III. 우선변제권 | VI. 맺음말 (제언)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우선평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우선평권의 특성과 내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임금우선평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담보물권의 일반적 특성인 부종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이 인정되지만, 다른 담보물권에 비하여 공시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수반성도 제한이 있다. 결국 임금우선평권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행사하는 방법은 권리자 스스로 배당절차에 실시하지 않고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한다. 임금채권자인 근로

DOI: 10.35148/ilsire.2019..19.209

투고일 : 2019. 06. 27. / 심사완료일 : 2019. 07. 19. / 게재확정일 : 2019. 08. 09.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자들이 배당절차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으므로, 전문 금융기관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양수해서 임금우선평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임금우선평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일부 임금채권에 국한하여 고용노동부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준 다음 임금우선평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제자 대위규정을 확대 해석한다면 굳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하여 체불임금을 선 지급해 주고 임금우선평권을 변제자로서 대위행사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를 확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임금우선평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의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 등 사용자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반면, 특정승계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들에 대하여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특정승계 이전의 소급효만 부인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과 근로자의 임금보호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느냐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 피해를 줄이면서도 특정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주제어] 임금우선평권, 담보물권, 배당절차참가, 변제자대위, 소급효

I. 머리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임금우선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의하면 체불임금채권이 사용자에게 대한 다른 채권 및 조세, 공과금 등의 채권에 모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에서는 체불임금 중에서도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의 경우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된 채권들보다도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우

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체불임금 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채권자평등원칙의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물권들보다도 더 우선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엄격한 공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여타의 부동산 담보물권들에 비하여 공시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임금우선평특권 규정은 체불임금 채권에 대하여 단순한 채권적 효력을 넘어선 강력한 담보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공시에 친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금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운용이 필요하다. 이하 본고에서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우선평특권의 특성과 내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제반 특성

임금우선평특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현재 우리의 판례와 다수설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모두 포괄하여 법정 담보물권으로 해석하는 입장¹⁾이다. 법정담보물권인 만큼 공시에 친하기 어려운²⁾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임금우선평특권을 부동산에 공시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도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임금우선평특권도 다른 담보물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공시요건

1) 조일권, “임금우선평특권의 물권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제57권, 한국노동법학회, 2016, 43쪽; 조일권/김인재, “임금우선평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17쪽.

2) 정재중, “근로자의 임금우선평특권에 관하여”, 민사법연구 제5권, 대한민사법학회, 1996, 214쪽.

을 갖추었다는 견해³⁾도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사용자가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사업장 밖의 제3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문건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우선평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다른 법정담보물권 중 하나인 유치권이나 주택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과 같이 점유의 개시를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제3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법정담보물권의 존재를 알기는 어렵다.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 유치권에 대하여도 엄격한 공시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담보 물권들에 비하여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해들⁴⁾이 상당한 점을 감안한다면, 유치권보다도 외관상 그 존재여부를 더욱 알기 어려운 임금우선평권의 경우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우선평권은 임금이 주된 생계수단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려⁵⁾하에서 마련된 법정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인 만큼 임금우선평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특성인 부종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피담보채권인 임금채권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⁶⁾로 하고 있고, 권리의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구체화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에도 권리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과 임금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금액에 대한 전액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⁷⁾이 그것이다. 임금우선평권은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전체 책임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만큼,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물상대

3) 조일권/김인재, 앞의 논문, 213쪽.

4) 박득배,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 법과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사)한국법정책학회, 2017, 174쪽; 홍봉주,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일감법학 제31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8쪽.

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판결

6) 이상태, 물권법 제5판, 법원사, 2007, 363쪽.

7) 지원림, 민법강의 제14판, 홍문사, 2014, 700-701쪽.

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⁸⁾도 있으나, 임금우선평권은 다른 담보물권들과 마찬가지로 가치지배권인 이상 담보물의 가치가 금전 등의 형태로 변할 경우 이러한 가치변형물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⁹⁾ 물상대위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이외에도 수반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이하 본고의 다른 항목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우선변제권

1. 내용

임금우선평권의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변제권인데 그 중에서도 임금채권의 일반적인 우선변제권과,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 등에 국한하여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나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기할 점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집행절차에서 임금우선평권과 동위의 우선적 변제권을 가지는 법정담보물권인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경우 독자적인 경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임금우선평권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경매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¹⁰⁾ 있다. 현재까지 우리의 판례나 실무관행을 보면 임금우선평권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매청구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금우선평권의 공시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8) 조일권, 앞의 논문, 49쪽.

9) 이상태, 앞의 책, 435쪽.

10) 조일권, 앞의 논문, 50쪽.

는 만큼 우리 법원은 임금우선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¹¹⁾이다. 따라서 임금우선평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배당요구이다. 주의할 점은 배당절차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짓는 절차가 아닌 만큼, 권리자는 반드시 스스로 절차에 참여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¹²⁾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임금우선평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가사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우선평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로 금액을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¹³⁾ 다만, 임금우선평권이 있는 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채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¹⁴⁾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행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대상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임금우선평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임금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¹⁵⁾ 또한 유의사항이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국한됨에 따른 해석의 결과이다.

1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판결

1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판결

1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판결

1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판결

15)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결정

2. 인정범위

임금우선평권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74년 1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임금우선평권 규정을 처음 만들었고, 이후 198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임금우선평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최우선변제규정 중 ‘최종 3개월분’이라는 제한이 임금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도 함께 제한한 규정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최종 3개월분’은 임금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최우선변제가 근로기준법에 입법된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전액 최우선변제의 대상이라고 판단¹⁶⁾하였는데, 위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약 2년 뒤인 1997년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우선변제 규정 중 퇴직금 부분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범위나 한도의 제한 없이 퇴직금 전액을 조세, 공과금 및 약정 담보물권 등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할 우려가 있다는 것¹⁷⁾이 그 결정의 이유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었다.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을 임금과 마찬가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찬반 의견¹⁸⁾ 외에도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평권 규정의 합헌성 여부는 여러 가지

16)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판결

17)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결정

18) 오진환, “임금우선평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법조 제42권 제8호, 법조협회, 1993, 76-78쪽; 하종강, “퇴직금최우선변제가 쓰레기통으로 간 까닭”, 월간사회평론 길 제98권 제3호, 사회평론, 1998, 195쪽; 강주원,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 월간경영계 제212권, 한국경영자총협회, 1995, 57쪽.

측면에서 계속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타권 중 최우선변제규정 신설 이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약정담보물권에 대하여도 우선특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위 규정의 소급효를 부인하여 법 개정 이전에 설정된 근로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효력을 부정¹⁹⁾하였다. 더 나아가 최우선변제권의 인정과 관련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을 근로자의 근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례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의미한다고 함²⁰⁾으로써 금액이 아니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 미지급분 임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임금우선타권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합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공시를 할 수 없는 임금우선타권의 속성상 공시기준을 모두 맞춘 여타의 담보물권자들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임금의 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모든 임금액이 그 대상이 아니라, 같은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에 대한 임금액이 그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1년간의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시기가 최종 3개월의 근로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전액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근로에 대한 금액만큼만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례²¹⁾가 있다. 이외에도 근로기

19)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판결

2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판결

준법상의 직장수급인의 임금채무 연대책임규정과 관련하여 임금우선평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장수급인이 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장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우선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²²⁾는 입장이다.

IV. 수반성의 문제

1. 임금채권의 양도

수반성의 문제는 일반적인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따라 그 담보물권도 함께 수반하여 양도된다는 속성인데, 임금우선평권의 경우에도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여타의 다른 담보물권과 같이 수반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논하려면 임금채권의 양도가능성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금채권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채권의 양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이를 허용하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²³⁾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채권의 양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채권의 직접지급 원칙 하에서 임금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우선평권의 수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2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판결

2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판결

23)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362-363쪽.

임금채권양도의 경우까지 수반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²⁴⁾가 있다. 자발적 임금채권양도의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임금우선평권의 수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본다. 임금우선평권의 수반성을 인정한다면,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임금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액 상당을 지급받아 생활의 곤궁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장에게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추심·수령권을 위임한 사례가 있는데, 체불임금 지급조로 회사와 노동조합장 사이에서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 양도 이전에 회사에 대하여 국세보전처분을 위한 세무당국의 압류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형식상으로는 물품대금 채권양수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기 위한 물품대금 양수채권 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²⁵⁾하였다. 위 판결은 단순히 그 결론만 본다면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노동조합장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판결의 법리를 살펴보면 임금채권양수인의 임금우선평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위 판례와 같이 임금채권양수인의 채권청구가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인정된다면 임금우선평권도 이에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평권은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권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상의 선원임금우선평권의 경우 우리 상법규정에 의하여 선박우선평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데, ‘선박우선

24) 조일권, 앞의 논문, 48쪽.

2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판결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Geneva, 6 May 1993))²⁶⁾에 의하면 선박우선평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는 그 선박우선평특권의 양도 또는 대위를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선박우선평특권과 임금우선평특권의 내용이나 효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선박우선평특권은 독자적 경매신청권을 가질²⁷⁾ 뿐만 아니라 임금우선평특권이 가지지 못한 추급효를 가지지만 그 대상이 선박에 국한되는²⁸⁾ 반면, 임금우선평특권은 그 대상이 사용자의 모든 책임재산에 미치지만 추급효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우선평특권은 선박우선평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²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금우선평특권은 그만큼 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근로자와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진 임금채권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평특권의 수반성을 인정함으로써 체불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이 전문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체불임금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2. 임금우선평특권의 대위

수반성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임금채권 그 자체의

26) Article 10 (Assignment and subrogation)

1. The assignment of or subrogation to a claim secured by a maritime lien entails the simultaneous assignment of or subrogation to such a maritime lien.

<https://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aconf162d7_en.pdf> 검색일: 2019.6.10.

27) 대법원 1994. 6. 28. 자 93마1474결정

28) 송재우, “선원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56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쪽.

29)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판결, 임금우선평특권이 선박우선평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이들 학설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재우 위 논문 10-13쪽 참조

양도는 아니더라도 제3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한 경우 변제자의 임금우선평권 대위행사이다. 임금채권의 양도·양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 대신 변제한 자에게는 적어도 민법 제480조와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금우선평권 대위행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을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사용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고, 이렇게 사용자에게 융자해준 해당금채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대위함에 있어 임금우선평권이 수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같은 순위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³⁰⁾이다. 이 경우 가사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변제는 민법 제48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자 법정대위 규정에 의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우선평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해당금채권과 해당금으로 미처 변제받지 못한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경합하고 담보목적물인 사용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근로자가 직접 행사하는 임금우선평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임금우선평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액수라면, 근로자의 임금우선평권은 공단이 대위하는 임금우선평권에 대하여 우선³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제자 대위를 굳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30)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판결

3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판결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위변제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변제가 아니더라도 앞서 임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자 특히 전문금융기관이 임의로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민법 제480조 소정의 변제자의 임의대위규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변제자 임의대위 규정의 보다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³²⁾와 같이 임금우선택권은 독자적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집행절차 상의 기한³³⁾을 잘 지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임금우선택권을 가진 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변제자의 임의대위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금융기관이 선 변제한 후 전문가인 금융기관이 집행절차에서 임금우선택권을 대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실기할 수도 있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유의할 점은 임금우선택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실기하지 않고 제때에 집행절차에 참가하였을 때에만 실효성이 있는 만큼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채무 이행조로 자신의 공장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기하여 근로자대표는 건물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건물주가 근로자대표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건물주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채권자인 납품업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채

32) 본고의 III. 1. 우선변제권 내용 부분 참조

3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행사를 위한 배당요구기한을 배당기일 또는 경락기일로 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었음, 오진환, 앞의 논문, 84쪽 참조

권양도 이전에 이루어지고 이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가압류가 본 압류로 전이되었다면 임금우선평권이 위 압류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³⁴⁾ 등은 근로자가 직접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V. 소급효와 추급효

1. 소급효

임금우선평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먼저 생각해볼 점은 소급효의 인정 여부이다. 즉, 사용자가 계속 소유해온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부동산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기하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들과 임금우선평권 중에서도 특히 최우선변제권 간의 우선순위가 문제된다.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임금최우선변제권이 이에 우선하는 반면, 소급효를 부인한다면 임금최우선변제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지위 취득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 문제는 앞서 본 공시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실제로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담보의무자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는지 여부와 설혹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임금채불을 함으로써 임금우선평권을 가지는 근로자가 나타날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다. 현재 우리의 판례는 임금최우선변제권이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설정된 담보

34)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판결

물권에도 우선³⁵⁾한다는 입장이다. 판례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로서 등기를 경료하고 모든 공시를 다 갖추었다고 담보물권자 스스로 믿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추후에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우선평권자의 발생 여부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담보권자로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우선평권자가 나타나서 소급하여 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담보물권자가 입는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다른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보다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보장이 우선³⁶⁾되어야 한다는 임금우선평권의 입법적 취지를 고려한 판단으로서 이는 임금우선평권의 성격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론으로 보인다. 판례는 임금우선평권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다른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도 고려하여 임금최우선변제권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금액제한이 아닌 기간제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³⁷⁾을 취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사용자가 부동산을 특정승계하기 전에 기히 설정된 담보물권과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자의 임금우선평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앞서 본 사용자지위 취득과 관련한 소급효는 비록 사용자지위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동산은 사용자의 소유였음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임금우선평권이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설정된 약정 담보물권에 우선한다는 논리이다. 반면, 특정승계의 경우 사용자가 부동산을 특정승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였던 부동산에 약정 담보물권을 설정한 담보권

3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판결

36) 노호창, “사용자지위 취득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간의 우열관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판결”, 노동법학 제44권, 한국노동법학회, 2012, 331쪽.

37) 본고의 III. 2. 우선변제권 인정범위 부분 참조

자의 권리와 특정승계 후 새롭게 소유자가 된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임금우선평권 간의 우열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거래의 안전이 더 문제될 소지도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 법원은 임금우선평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특정승계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평권이 우선하지 아니한다는 입장³⁸⁾이다. 거래의 안전을 생각해서 사용자가 부동산을 특정승계하기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담보권자의 권리만큼은 임금우선평권에 우선하여 원래 담보물권의 취지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입법 목적이 거래의 안전 즉 다른 담보권자들의 예측가능성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들³⁹⁾이 상당한데, 특별한 공시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임금우선평권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입장에서 임금우선평권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은 특정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임금우선평권의 속성이다. 아울러, 비록 특정승계 전에 사용자가 아닌 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물권을 취득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속성상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 절차 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것인 만큼, 담보목적물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커진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다른 담보권자들을 굳이 특정승계 전후로 나누어 특정승계전의 권리자들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부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38)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판결

39) 이준현, “사용자의 총재산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사이의 우열관계”, 노동법학 제4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2, 313쪽; 노호창, 앞의 논문, 329쪽.

2. 추급효

소급효에 이어 살펴볼 점은 추급효이다. 추급효란 담보목적물이 담보권설정자 이외의 자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쫓아서 이에 대한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우리 민법은 추급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규정상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변제 규정 등은 모두 담보물권의 추급효를 전제로 한 규정⁴⁰⁾들로서 담보물권 중에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변제를 확보하는 구조를 가진 담보물권들의 경우 통상 추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담보물의 교환가치가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 만큼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는 한 그 교환가치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권⁴¹⁾은 추급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에서 출발하는 효력이 추급효인 만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우선평권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우선평권은 추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⁴²⁾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다른 담보물권 들에 대하여는 통상 인정되는 추급효가 임금우선평권에 대하여 부인되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우선평권은 다른 담보물권 들과 달리 공시에 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의 목적물이 항상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추급효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평권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

40) 박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제7권 물권(4), 박영사, 2005, 111쪽.

41) 지원림, 앞의 책, 758쪽.

42) 오진환, 앞의 논문, 67쪽.

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⁴³⁾이다.

Ⅵ. 맺음말 (제언)

임금우선평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른 담보물권들과는 달리 특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전체 재산을 그 담보목적물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가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도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없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금우선평권의 행사방법은 다른 담보물권들과 달리 제한을 받기도 한다. 임금우선평권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사용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은 근로자로 인하여 그 경매부동산의 다른 저당권자는 사용자의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을 부담할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소유 중 일부로서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 순위 저당권자는 동시배상의 경우 임금우선평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우선평권자를 대위할⁴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

4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판결

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우선평특권은 제한될⁴⁵⁾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임금우선평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액 상당을 지급받아 생활하게 하고 집행절차 등에 익숙한 전문가가 임금우선평특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안으로 입법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임금우선평특권 대위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평특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임금우선평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도 집행절차 전문가가 아니므로 실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사례⁴⁶⁾도 있다. 물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실기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변제해주지 않는 체납임금채권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배당절차에 실기하지 않고 참여하여 임금우선평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욱 특기할 점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임금우선평특권 대위행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절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임금우선평특권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별제권을 인정해주지 않

4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판결

4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판결

46) 대법원 2007. 11. 29. 자 2007그62결정

고⁴⁷⁾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동법이 근로기준법 상의 최우선 변제 대상뿐만 아니라 체납임금 전액에 대하여 공익채권 내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채권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하게 된 경위는 체당금 지급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행하여지는 만큼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개별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라는 단순한 추측도 해보지만, 과연 바람직한 법 규정인지는 의문이다. 집행절차에 밝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면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전문 금융기관 등이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평권을 대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에게도 근로자 자신이 임금우선평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뿐만 아니라 파산 및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평권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은 소급효 중에서도 사용자지위 취득 전의 소급효는 인정하는 반면, 특정승계 전의 소급효는 부정하고 있다. 거래의 현실이나 법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 인정문제에서 일관성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결국 공시를 갖춘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과 근로자의 임금보호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임금우선평권의 소급효만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과 같이 담보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까지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방안⁴⁸⁾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

4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 2

48) 정채종, 앞의 논문, 242쪽.

더라도 특정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 담보권설정에 있어 임금우선평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려는 사람들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존재가능성은 고려하면서도 임금우선평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향후 임금우선평권의 존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각종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담보권 설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상반되는 요구의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제7권 물권(4), 박영사, 2005.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이상태, 물권법 제5판, 법원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제14판, 홍문사, 2014.

2. 학술지

강주원,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 월간경영계 제212권, 한국경영자총협회, 1995, 56-59쪽.

노호창, “사용자지위 취득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간의 우열관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노동법학 제44권, 한국노동법학회, 2012, 325-332쪽.

박득배,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법과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사)한국법정책학회, 2017, 167-195쪽.

송재우, “선원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56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29쪽.

오진환, “임금우선평특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법조 제42권 제8호, 법조협회, 1993, 61-89쪽.

이준현, “사용자의 총재산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사이의 우열관계”, 노동법학 제4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2, 287-326쪽.

정채중, “근로자의 임금우선평특권에 관하여”, 민사법연구 제5권, 대한민사법학회, 1996, 211-243쪽.

조일권, “임금우선평권의 물권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제57권, 한국 노동법학회, 2016, 31-70쪽.

조일권/김인재, “임금우선평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97-236쪽.

하종강, “퇴직금최우선평제가 쓰레기통으로 간 까닭”, 월간사회평론 길 제98권 제3호, 사회평론, 1998, 195쪽.

홍봉주,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일감법학 제31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33쪽.

[Abstract]

Preferential Right of Wage Claims as a Security Right

Choi, Uni*

Article 38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that wages and retirement grants claims shall be paid in preference to taxes, public charges, or other claims except for claims secured by pledges, mortgages, or the security right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on the whole property of the employer concerned. It also states that the wages of the last three months and the retirement grants of the last three years shall be paid in preference to taxes, public charges, or any claims secured by pledges, mortgages, or the security right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on the whole property of the employer. The preferential right to repayment of wage claims (hereinafter “preferential right”) is commonly understood as a kind of real security right. However, it is different from other real security rights in that it is not easily noticeable by other relevant security righters. For that reason, the preferential righters are not allowed to apply for an auction of any property of the employer concerned. Rather, the only way to satisfy the preferential rights is to take part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s. The preferential righters who are workers are not usually well acquainted with the distribution procedures, and therefore have

*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difficulties in keeping the distribution schedule set by the court. It will be very helpful if the workers hand over their wage claims to the financial companies like debt collecting specialist business organizations, in return for the amount of the overdue wage deducted by reasonable commission rate of such organizations. Accompaniment rule is required for the purpose, which means that the transfer of the claims is accompanied with the transfer of the preferential rights. According to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overdue wages of the last three months and retirement grants of the last three years can be pai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Welfare Servi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reinafter "the Service") on behalf of the employer, and thus the wage claims are transferred to the Service. The Act further states that the transfer of the wage claims are accompanied by the transfer of the preferential rights originally given to the workers. Apart from the transfer of the wage claims to the Service, any other accompaniment rule of the preferential rights is not yet found to be applied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further the convenient collection of the overdue wages, the accompaniment rule needs to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the wage claims between workers and specialist financial companies. I would also like to suggest tha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preferential rights shall be more broadened. The court interprets the retractive effect is endowed only after the title is transferred to the employ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strict the retroactivity just by the title transfer, given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employer anyway at the time of the exercise of the preferential rights. It is preferable to have preferential rights prevail over the real security rights put on the property regardless of the time when the title was transferred to the employer concerned.

[Key Words] preferential right of wage claims, real security right, participation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s, subrogation of the performer of the obligation, retroactive effect